

2022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11. 19.

제안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 '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의 얻고자 함.

□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□ 출연개요

(단위: 천원)

순번	출연기관	출연금	주요사항
계	6개	4,443,321	
1	강원연구원	50,000	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
2	평창평화센터	434,800	올림픽 평화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재단 운영비 출연
3	한국지방세연구원	4,528	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
4	평창장학회	1,030,000	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
5	강원도관광재단	30,000	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,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6	평창군문화예술재단	1,743,993	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재단 경영을 위한 운영비, 자본형성비 등 출연
7	강원테크노파크	150,000	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지원 및 기업경영 안정화,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
8	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	1,000,000	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·축·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
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실	'22년 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공석)
- 일반현황
 - 개 원 : '94. 9. 1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
 - 조직 : 2본부·4실·2단·3부·6센터, 현원 55명(정원 66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금액 : 50,000천원
- '22년 주요사업 내용
 - 시 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
 - 시 군에서 요구하는 시군협력 정책 과제 건 시군협력 현안 과제 2건
 - 네트워킹 사업 주관
 -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
 -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, 포럼, 정책콘서트, 세미나 등 개최
 - 시군 1:1 전담 서비스 제공
 -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
 - 연구제안 행정사항 등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드백
 -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
 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

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정기 제공
- 주요공모사업 캘린더 제공(연초)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.
- 그러나,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 수입원인 수탁과제의 수입이 공개입찰제도의 정착에 따라,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요한 수입원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준낮은 금리로 인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외에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, 물가 상승 등의 지출증가 요인이 있음.
-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.
-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.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 행정안전부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○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기금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"강원연구원 육성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·군 및 그 외의 출연금,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도 및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50,000천원

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주 4회), 정책 연구과제 용역 수행(1건)
- 포럼·토론회 실시(2회), 수시과제·정책메모 수행(2건)
-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 양지원 연구원) 운영

□ 기대효과

-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활성화
- 정책변화에 선제적인 맞춤형 정책수립과 국책사업 발굴 확대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군정지원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강원포럼 등)
- 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

평창평화센터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올림픽유산과	'22년 출연예상액	434,8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(이사장 한왕기)
- 일반현황
 - 법인등기 : '21. 8. 30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-27
 - 기본재산 : 1억 원
- 조 직
 - 이 사 회 : 9명(이사장, 이사 6, 감사 2)
 - 사 무 국 : ('22년) 2팀 6명 ⇨ ('23년) 2팀 9명 ⇨ ('24년) 3팀 14명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금액 : 434,800천원
- '22년 주요사업 내용: 재단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
□ 출연 필요성

- 올림픽 평화유산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으로 2018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사업의 본격화
- 재단법인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재단법인의 운영체계 확립

□ 출연 근거

○ 「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14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

제16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○ 출연금 : 434,800천원

○ 인건비 및 운영비 : 334,800천원

- 인건비(보수) : 173,934천원
- 기타 운영경비 : 160,866천원
 - 사무관리비(69,696) 일반수용비, 공공운영비
 - 국내여비(18,720) 관내 및 관외여비
 - 복리후생비(36,290) 4대보험 사업자부담, 기타복리후생비
 - 기타 운영비(36,160)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, 수선유지비, 행사홍보비

○ 연구개발비(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) : 100,000천원

※ 평화주간 운영 및 평화 아카데미 운영프로그램 예산은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보조금으로 편성

□ 출연 기대효과

- 본격적인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
-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 확보

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

주관부서	재무과	'22년 출연예상액	4,528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(원장 배진환)
- 일반현황
 - 설립일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
 - 소재지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: 이사회, 기획조정실, 연구본부, 교육본부, 경영지원실
 - 운영인력: 77명(이사장 포함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금액: 4,528천원
 -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- 사용용도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소비세·소득세 확대 발전, 신규세원 발굴 준비
-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,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
-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
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1. 1만분의 1.2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4,528천원 = $37,729,587\text{천원} \times 0.00012$
 - 전전년도('20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(시행령 제94조)
- ※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 공포(2021.2.19)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 신세원 발굴, 지방소득·소비세 발전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
- 지방의 관점에서 경제·사회 현상을 분석·연구하여 지방재정·세제의 역할과 방향 도출에 기여
-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중 제고에 기여 등

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

주관부서	교육체육과	'22년 출연예상액	1,0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 : 재단법인 평창장학회(이사장 한왕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1990. 8. 10.
 - 설립근거 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(평창군청내 교육체육과)
 - 기 구 : 이사회 10명(이사장 1, 이사 7, 감사 2)
 - 기금조성 : 8,459백만원(기본재산 8,178백만원, 보통재산 281백만원)

□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액 : 1,030,000천원
- '22년 주요사업 내용
 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: 800명, 1,600,000천원

□ 출연 필요성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군민들의 자발적 장학금 기탁과 이자수입에 의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있으나,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장학기금 확보가 어려워 군 출연금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
-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,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증액 출연이 필요함

□ 출연 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○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

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○ 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장학기금의 출연)

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1,030,000천원

○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기조성	연 차 별 조 성 목 표					비고	
			소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	2022년
합계	10,229	4,834	5,398	602	1,120	1,193	1,240	1,240	
군 출연금	7,550	3,100	4,450	330	1,030	1,030	1,030	1,030	
기탁금등*	2,679	1,734	948	272	90	163	210	210	

※ 기탁금 등 : (설립기금+기탁금+이자수입) - (장학급 지급 등 지출액)

□ 기대효과

○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○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관내 인구증가 기여

강원도관광재단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문화관광과	'22년 출연예상액	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(재)강원도관광재단 (대표이사 강옥희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20. 10. 13.
 - 설립형태 : 비영리재단법인
 - 설립근거 : 지방출자·출연법 제4조, 민법 제32조
 - 소재지 : 춘천시 안마산로 89, 세종캐슬빌딩 3층(퇴계동)
 - 조직 : 1본부 3실 10팀(46명) ※ 현원 1본부 3실 8팀(33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금액 : 30,000천원(기본경비·사업비)
- '22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정보 조사·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
 - 강원형 DMO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 -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
 - 관광콘텐츠·상품 개발
 - 국제회의 유치·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

□ 출연 필요성

-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·시군 통합형 관광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
-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 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
□ 산출기초

- 18개 시·군 각 30,000천원 동일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급변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·능동적 대처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철저
-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진흥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자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**지방의회**의 **의결**을 얻어야 한다.

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③ 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
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평창군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문화관광과	'22년 출연예상액	1,743,993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재단법인 평창군문화예술재단(이사장 김도영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12. 11. 30.(도 설립허가 2012.11.21.)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, 평창군문화예술재단 2층
 - 기 구(현) : 21명(이사장 1, 이사 13, 감사 1, 직원 6)
 - 기본재산 : 1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금액 : 1,743,993천원('21년 당초 출연액 1,058,691천원)
- '22년 주요사업 내용
 - 문화도시 지정추진, 강원국제예술제,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, 지역문화 사관학교, 문화예술 육성지원, K-POP 아카데미 운영,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, 찾아가는 공연전시시네마, 전시사업 활성화, 문화예술시설(달빛생활문화센터, 봉평콧등작은미술관, 감자꽃 스튜디오) 운영

□ 출연 필요성

- 문화도시, 강원국제예술제,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, 지역문화 사관학교 및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대행 등 평창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로드맵 가동
-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의 문화거점시설 운영활성화로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 및 문화복지 강화

-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, 문화, 교육 욕구 충족
-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구현
- 군민의 주체적 문화예술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- 문화향유 사각지대에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욕구충족 기반 마련
-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4조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: 1,743,993천원

(단위: 천원)

1.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운영비 735,993

가. 인건비 430,357

- 1) 정규직(팀장2, 사원2) 187,356
- 2) 계약직(팀장1, 사원3) 206,132
- 3) 퇴직급여 36,869

나. 기본경비 99,766

- 1) 사무관리비 75,516
- 2) 공공운영비 24,250

다. 여비 및 기타경비 195,870

라. 자산취득비 10,000

2.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사업비 1,008,000

가. 공연사업 375,000

- 1)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00,000
- 2)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60,000
- 3) 평창청소년 K-POP 아카데미 운영 85,000
- 4) 인문학여행 50,000
- 5) 찾아가는 공연·시네마 운영사업 80,000

나. 평창 문화도시 추진 390,000

- 1) 평창문화연구소 140,000
- 2) 평창라운드테이블 60,000
- 3) 평창문화도시 포럼 40,000
- 4) 시민참여예산제 20,000
- 5) 청년정책위원회 10,000
- 6) 평창문화어라운드 45,000
- 7) 청소년 문화아지트 45,000
- 8) 청년 문화교류 프로젝트 30,000

다. 전시사업 243,000

- 1) 찾아가는 전시운영 40,000
- 2) 전시사업 활성화 203,000

□ 출연 기대효과

- 문화도시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군민 거버넌스 활성화
- 평창군 문화예술교육,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군민 문화역량 강화
- 군민 세대교류 및 일상축제, 공연전시 등으로 문화복지 실현
- 평창군문화예술재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
-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**지방의회**의 **의결**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③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

제5조(재산) 재단의 재산(제3회에서 “재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
제6조(출연 등)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.

강원테크노파크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

주관부서	일자리경제과	'22년 출연예상액	15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 : (재)강원테크노파크(원장 : 김성인)
- 일반현황
 - 설립 : '03. 12. 24.
 - 설립근거 :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및 「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」
 - 소재지 :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
 - 조직 : 3단 4센터 1본부 2실 1협력관 1부설기관 27팀 140명
 - 주요기능 : 지역산업정책기획, 지역혁신거점사업, 신소재·방재 기술지원, 인력양성, 연구개발, 국제공동연구 등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금액 : 150,000천원
-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 10백만원 이하, 기업 자부담 10% 이상
- '22년 주요사업 내용(5개 분야)
 - 시제품 제작 지원
 - 기업홍보 지원(홍보 및 홍보물 제작)
 -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지원
 -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
 - 공용장비활용 수수료 지원

※ 지원대상 : 평창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
2021년 이내 본사 또는 공장이전이 확정된 중소기업

□ 출연 필요성

- 국내·외 시장개척, 마케팅, 경영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평창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
→ 매출증대,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

□ 출연 근거

-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- 산업통상자원부

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재원조성)

-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 및 강원도, 시·군의 출연금품

□ 산출기초

- 15개 중소기업 × 10,000천원 = 150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-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
- 전략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
-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공기업법 제53조 (출자)

-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제76조 (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장"은 "이사장"으로, "사채"는 "공단체"로 본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(공익법인의 범위)

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"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"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·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유통산업과	'22년 출연예상액	1,00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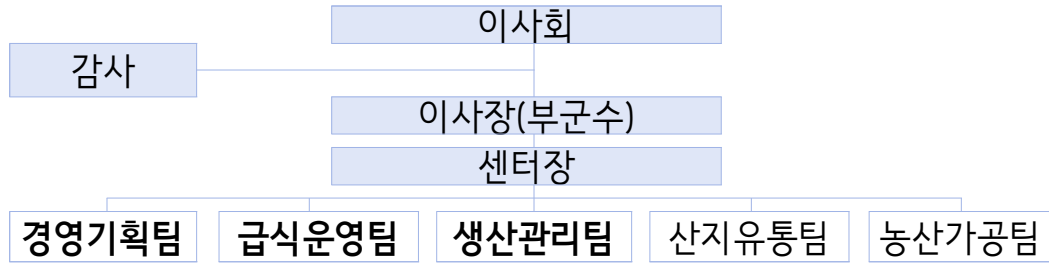
- 법인명 :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(이사장 정연길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'21. 8. 27.
 -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 - 소재지 :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
 - 조직 : 3팀 10명('21년) / 5팀 16명('23년 이후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2년 출연예정금액 : 1,000,000천원
- '22년 주요사업 내용
 -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수도권 대량 소비처 물류허브 구축
 -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, 꾸러미 사업 등
 - 유통·납품 식자재의 전처리(소분, 소포장) 및 한약재유통센터 운영
-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
 - 이사회 : 10명(이사장 1, 이사 7, 감사 2)
 - 운영인력 : (1단계) 3팀 10~12명 → (2단계) 4팀 21명 → (2단계) 5팀 29명

단계별	조직	인력구성(기간제 포함)
1단계 (`21년)	3팀 12명	▶ 센터장(1), 경영기획팀(3), 급식운영팀(3), 생산관리팀(5) ※ 경영기획팀(6급, 8급) : 공무원(2명) 파견 ※ 생산관리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기간제(2명) 포함
2단계 (`22년)	4팀 21명	▶ 센터장(1), 경영기획팀(3), 급식운영팀(3), 생산관리팀(5), 농산가공팀(9) ※ 생산관리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기간제(2명) 포함 ※ 농산가공팀 당귀 수확시기 단기 기간제(5명) 운영
3단계 (`23년 이후)	5팀 29명	▶ 센터장(1), 경영기획팀(3), 급식운영팀(3), 생산관리팀(10), 산지유통팀(3), 농산가공팀(9) ※ 생산관리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기간제(7명) 포함 ※ 농산가공팀 당귀 수확시기 단기 기간제(5명) 운영

- 조직도



- 정원 및 주요업무

· (1단계 : 2021년) 3개팀 12명(경영기획팀, 급식운영팀, 생산관리팀)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8	2	2	12	
센 터 장	1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1	2	-	3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-	3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관리팀	3	-	2	5	농가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직매장 관리

· (2단계 : 2022년) 4개팀 21명(농산가공팀 신설)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13	1	7	21	
센 터 장	1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2	1	-	3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-	3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관리팀	3	-	2	5	농가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직매장 관리
농산가공팀	4	-	5	9	한약재유통센터 및 잡곡가공센터 운영, 1차 전처리 및 가공업무 관리

· (3단계 : 2023년) 5개팀 29명(산지유통팀 신설)

조직구분	일반직	파견 (공무원)	기간제	합계	담당업무
합계	16	1	12	29	
센 터 장	1	-	-	1	재단법인 업무 총괄
경영기획팀	2	1	-	3	기획, 인사, 회계, 홍보 및 마케팅
급식운영팀	3	-	-	3	학교급식, 수발주, 집배송, 검수, 소분관리
생산관리팀	3	-	7	10	농가조직화 및 관리, 계약재배, 직매장 관리
산지유통팀	3	-	-	3	수도권 공공급식 및 농산물 유통 공급
농산가공팀	4	-	5	9	한약재유통센터 및 잡곡가공센터 운영, 1차 전처리 및 가공업무 관리

○ 추진상황

-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·운영방안 계획수립 용역 : '19. 2월
- 평창군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및 포럼 개최 : 2019. 11. 19.
-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교육(1,600여명) : 2020. 1. ~ 현재
- 평창군 먹거리 보장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: '20. 4월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: '20. 10월
- 강원도 출자·출연기관 설립 1차 협의 : '20. 7. 28.
- 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원안결 : '21. 1. 20.
- 강원도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조건부 동의 : '21. 3. 16.
- 2021년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: '21. 4. 7.
 - 총사업비 : 12,560백만원(국비 4,398, 군비 7,498, 자부담 664)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1차회의 : '21. 6. 2.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2차회의 : '21. 7. 14.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발기인 총회 : '21. 7. 23.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임원 임명장 수여 : '21. 8. 5.
- 비영리법인 설립허가(강원도청 유통원예과) : '21. 8. 19.
- 재단법인 설립등기(법원) 및 사업자 등록(세무서) : '21. 8. 27.
- 재단법인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(8명) : '21. 9월
 - 정규직 직원 : 7명(급식운영팀장 1, 생산관리팀장 1, 직원 5)
-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 임용 및 업무개시 : '21. 10. 1.(예정)

□ 기대 효과

- 관내 중소가족농, 고령농, 귀농·귀촌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

붙임 : 2022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용계획 1부. 끝.

[붙임]

<2022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용계획>

2022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(수익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관	항	세항	목	예산액 (천원)	전년도 예산액	증감 (A)-(B)
수익					3,274,420	600,000	2,644,420
[100] 자본적수입					100,000	-	100,000
	[180] 유보자금				100,000	-	100,000
		[181] 순세계잉여금			100,000	-	100,000
		[181-01] 순세계잉여금			100,000	-	100,000
		○ 자치단체 출연금 전년도 집행잔액(이월금)			100,000	-	100,000
[600] 사업수익					3,174,420	600,000	2,544,420
	[610] 영업수익				1,150,000	600,000	520,000
		[648] 출연금수익			1,000,000	600,000	400,000
		[648-02] 자치단체출연금수익			1,000,000	600,000	400,000
		○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			1,000,000	600,000	400,000
		[661] 기타영업수익			150,000	-	120,000
		[661-19] 기타영업수익			150,000	-	120,000
		○ 계약재배, 대량 소비처 농특산물 공급 수수료			30,000	-	30,000
		○ 온.오프라인 직거래 판매 수수료			30,000	-	30,000
		○ 한약재 유통센터 운영 수수료			50,000	-	50,000
		○ 로컬푸드 판매장(직영) 수수료			40,000	-	40,000
	[670] 영업외수익				2,024,420	-	2,024,420
		[673] 정부보조금수익			2,024,420	-	2,024,420
		[673-02] 자치단체보조금수익			2,024,420	-	2,024,420
		○ 친환경 급식지원			1,469,067	-	1,469,067
		○ 친환경(우수) 식재료 지원			111,453	-	111,453
		○ 친환경(쌀) 차액지원			40,000	-	40,000
		○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			403,900	-	403,900

2022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(지출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관	항	세항	목	세목	예산액	전년도	증감
							예산액	(A)-(B)
재단법인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						3,274,420	600,000	2,674,420
[700] 사업비용						3,274,420	600,000	2,674,420
[710] 영업비용						3,274,420	600,000	2,674,420
[722] 대행사업비						2,024,420	0	2,024,420
[308] 자치단체 등이전						2,024,420	0	2,024,420
[10] 자치단체 보조금						2,024,420	0	2,024,420
o 친환경 급식지원						1,469,067	0	1,469,067
o 친환경(우수) 식재료 지원						111,453	0	111,453
o 친환경(쌀) 차액지원						40,000	0	40,000
o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						403,900	0	403,900
[754] 일반관리비						1,085,984	494,770	591,214
[100] 인건비						511,871	140,890	370,981
[01] 보 수						511,871	140,890	370,981
[108] 퇴직연금 부담금						50,722	0	50,722
[108] 퇴직연금 부담금						50,722	0	50,722
[201] 일반운영비						167,880	74,380	93,500
[01] 사무관리비						79,600	49,980	29,620
[02] 공공운영비						88,280	24,400	63,880
[202] 여 비						36,000	18,000	18,000
[01] 국내여비						36,000	18,000	18,000
[203] 업무추진비						12,000	5,000	7,000
[07] 사업업무추진비						12,000	5,000	7,000
[204] 직무수행경비						16,200	5,340	10,860
[01] 직급보조비						16,200	5,340	10,860
[207] 연구개발비						45,000	72,000	-27,000
[02] 전산개발비						45,000	72,000	-27,000
[212] 복리후생비						83,511	27,200	56,311
[01] 사회보험부담금						63,811	14,400	49,411
[02] 기타복리후생비						19,700	12,800	6,900
[213] 교육훈련비						5,000	4,400	600
[213] 교육훈련비						5,000	4,400	600
[214] 수선유지교체비						2,000	0	2,000
[05] 수선유지비						2,000	0	2,000
[216] 행사홍보비						26,000	25,000	1,000
[01] 행사운영비						20,000	25,000	-5,000
[03] 광고선전비						6,000	0	6,000
[04] 판매 촉진비						30,000	0	30,000
[217] 관서업무비						4,400	2,000	2,400
[01] 정원가산업무비						800	800	0
[02] 부서업무비						3,600	1,200	2,400
[220] 위탁관리비						120,000	0	120,000
[220] 위탁관리비						120,000	0	120,000
[303] 포상금						400	0	400
[01] 포상금						400	0	400
[405] 자산취득비						5,000	120,560	-115,560
[01] 자산취득비						5,000	120,560	-115,560
[800] 예비비						164,016	105,230	58,786
[801] 예비비						164,016	105,230	58,786
[801] 예비비						164,016	105,230	58,786